

지정번호 제 호

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소재지:

3. 대표자:

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(법인)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